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



2020. 7.



Contents

I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요 1

II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8

1. 이용자 이용 절차(네이버, PASS, 카카오톡) 8
 - ① 네이버 8
 - ② PASS 12
 - ③ 카카오톡 14
2.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 18

III

주요 질의 응답(Q&A) 27

1. 일반사항 27
2. 이용자 34
3. 시설관리자 38

IV

홍보자료 46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요

1. 전자출입명부(KI-Pass)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手記)로 작성되어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개선
 -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칭함

2. 도입 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 발견
 - *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제한령'으로서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 (3.22)
 -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0% (2,032명)만 유선 통화 가능
 -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추진

3. 법적 근거

- 전자출입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임



전자출입명부 (KI-Pass)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음
-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5.8. 시행한 집합체한령령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작성 제도가 도입

4. 사용 절차



- ① (이용자)** 시설 이용시 QR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를 통해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성이 높은 네이버(6.10.~), PASS(6.24.~), 카카오톡(7.1.~) 등에서 발급 가능

-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방문 기록* 생성
 -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네이버, PASS, 카카오톡)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 상용 앱 운용회사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 가능

-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정보*(QR코드 인식 기록)를 서버 내 저장·관리
 - *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하지 않음

- ⑤ (방역당국)**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QR발급회사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QR코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방문정보 (시설정보, 방문시각, QR코드)를 각각 요청
 -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여 접촉자 추적 등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



전자출입명부 (K-Pass) 개요

-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통하여 접촉자 명단 파악 가능

※ [참고] 전자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수집 → ②분산 보관·관리 → ③4주 후 자동 폐기로 우려 최소화
* (QR발급회사) 이름, 연락처, 발급 시각, QR코드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 정보, 방문 시각, QR코드 등
-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는 QR발급회사 ‘방문정보’는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 (폐기) 코로나19 잠복기(14일)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 폐기

5. 사용 대상 시설 및 기간

- 의무적용시설: 고위험시설 12종, 개별적으로 ‘집합 제한’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한 시설

구분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계도기간
기준 8종 (‘20.6.10.~)	음식점	현텅포차, 감성주점	6.10.~6.30.
	유홍시설	유홍주점(클럽, 품살롱 등), 단란주점, 롤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等) * GX(Group Exercise) : 줄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평생직업학원(전체)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6.15.~7.5.
	PC방	PC방	
추가 4종 (‘20.6.23.~)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 물류센터	6.23.~7.14.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교육부 별도 지침 참고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 예외 :

- ①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
 - *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 한정
 - **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
- ②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 임의적용시설: 자율적 판단에 따라 앱 설치·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
- 적용 기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6. 수기장부 비치 및 관리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수기장부 작성* (신분증 대조)
 -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단기 체류외국인도 신분증 대조 후 수기장부 작성
- 작성 시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 이용·제공 금지

7. 의무시설 중 미사용시설에 대한 조치절차(7.1~)

- 의무적용시설 중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중대본) 고위험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QR 코드 설치) 철저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순회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요

[양식1] 수기장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문) 시설관리자가 작성하여, 이용자에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시설명) 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	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관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수기명부에 작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평상시 별도 보관, 4주 후 파기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명부 양식) 이용자는 아래 양식만 작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이용자 이용 절차

-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① 네이버 모바일 앱, ② PASS(통신사 본인인증 앱), ③ 카카오톡 중 원하는 앱을 통해 QR코드 발급

① QR코드 발급방법 – 네이버 모바일 앱

[가. QR 코드 발행 진행 경로]



① 네이버 앱(또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오른쪽 사람모양(또는 종 모양)
아이콘을 선택

* 네이버 앱을 업데이트 해야, ②이 보이게
되니 업데이트 요망



② QR체크인 선택
(사전 로그인 필요)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할 경우 동의 및 확인 선택



④-1 휴대전화 SMS 인증창이 나오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인증을 진행
(최초1회, PASS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함)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보호자 동의

NAVER 보호자 동의

보호자 동의

제 14세 미만 사용자는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표기하세요.
내부화면은 보호자 동의창고 기준 내용을 확장하였으니, 그로 인해 표시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호자 동의(14세 미만) 동의
보호자 동의(14세 미만) 동의
제 14세 미만 사용자는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표기하세요.
내부화면은 보호자 동의창고 기준 내용을 확장하였으니, 그로 인해 표시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의하기

[사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 ④-2 별도 **보호자 동의**가 필수
(최초 1회만 동의)



⑤-1 전자출입명부 QR 코드 발행 완료



[QR 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옆 화면이 나옴]
(2회까지 자동 재생성)

- ⑤-2 재시도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

[나. 최초 QR 발행(동의) 이후 QR 발급 절차]



※ 쉬운 방법 알아보기



네이버에서 “전자출입명부”를 검색(스마트폰에서만 가능)

- ① “내 QR코드 발급하기” : 바로 QR코드 발급화면으로 이동
- ② “전자출입명부(KI-Pass)란?” : 안내 페이지 이동
(포스터, 리플렛 다운로드 가능)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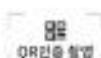
② QR코드 발급방법 – PASS 앱(통신사 본인 확인 앱)

※ 통신사(SKT, KT, LG)에 따라 화면이 일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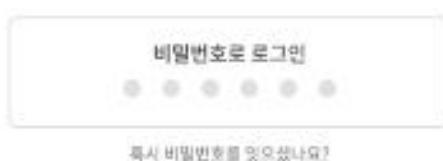
[가. QR 코드 발행 진행 경로]

PASS

쉽고 빠른 인증,
PASS로 인증해보세요



① PASS 앱 실행 이후,
로그인(PIN번호, 지문, 홍채 등)



혹시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PASS

님
안녕하세요.

최근 접속내역

0건 >

연결처 관리



QR출입증

본인확인
QR증명

장비설정전달
확인
장비제작하고!

② QR출입증 선택
(사전 로그인 필요)

**해당 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QR출입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작은 동의 후 QR생성을 누르세요.
[QR출입증은 개인정보방법 제49조, 제 76조 212
법원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할 경우 **동의 후**
QR생성 선택

- ✓ 모든 악관에 전체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필수)	보기
✓ 개인정보 처리와 제공 동의 (필수)	보기
<input type="button" value="닫기"/>	QR생성



[QR 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옆 화면이 나옴]

- ④-2 **재생성** 또는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

15초 남음

출입하려는 시설의 담당자에게
위의 QR코드를 보여주세요.

C QR코드 재생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③ QR코드 발급방법 _ 카카오톡

[가. QR 코드 발행 진입 경로]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후,

- ① 하단의 왼쪽 세 번째 버튼인 '#탭' 선택
- ② 상단의 왼쪽 첫 번째 버튼인 '코로나19' 선택
- ③ 화면 중간의 'QR 체크인' 선택

QR 체크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할 경우 **동의** 선택

QR 체크인

⑤-1 본인인증 또는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최초 1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QR 체크인

날짜	내국인
2023.10.13	미지
성명	성별
01000121234	한글변호자선택
1234678	남성(국민권호)
확인	

⑤-2 필요 정보 입력 후 인증



⑥-1 전자출입명부 QR 코드 발행 완료

[QR 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옆 화면이 나옴], 최초 3회까지 자동 재생성

⑥-2 재시도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

■ 시설 출입 시, 다음과 같이 QR 생성(이용자) 및 스캔(시설관리자)



■ 정상 인증 시, “인증되었습니다.”라는 음성메시지 송출 및 문구가 화면에 표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

가. 준비사항

- (필수)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혹은 태블릿PC 혹은 기타 장비), 휴대폰 충전기(혹은 태블릿PC 충전기), 대표자(혹은 방역관리자) 본인 명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 * 대규모 인원이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스캐너가 내장된 PDA 형태(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음
 - (선택) 거치대*(휴대폰 혹은 태블릿 PC 용)
 - * 시설 입장 손님이 직접 QR 코드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QR 코드 인식용 휴대폰(혹은 태블릿 PC)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아래 그림 참조)



- (미지원 장비) Windows 기반 POS 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치형 2D 레이저 스캐너(QR 코드 인식 가능)'는 사용불가



나. 필수 환경

- (네트워크 연결 필수) 본 전자출입명부 앱은 QR코드 인식 기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서버와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 (핫스팟 기능 활용 가능) 시설 외부에서 입장관리를 수행하는 관계로 WiFi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방역관리자 혹은 직원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을 동작하여 QR 코드 인식용 단말기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다. 시설관리자용 앱설치 절차

-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store), iPhone, iPad 등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App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 앱을 찾기(안드로이드 4.1 이상 혹은 iOS 11 이상)에 설치하여야 함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사용자)
또는 애플 앱스토어(iOS 사용자)에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② 사업자 신규 등록 버튼 선택



- ③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 (각 동의에서 '전체보기'를 할 경우, 전체 내용이 화면에 표시)



④-1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경우)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관할지역,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

II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 사업자등록정보

[주제] A/S/교환/반품 정보와 결제현황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십시오.

선행업

기록에璇한 후 사용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대표자명

사업장 전화번호

정품판 판매처 등록

정품판 판매처 등록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로 정체화 정보제공

사업자등록증 정보
[내용]-확인을 누르면 더욱 편리하게 주십시오.]

④-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체크하며,
다른 정보들은 모두 입력하여 가입
(단, 지자체 승인 후 사용 가능)



④-3 가입정보 중 업종은 필수 선택

(의무적용시설이 아닌 경우, “기타”를 선택하여 세부업종 선택)



④-4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번 가입할 경우)

- 확인 창에서 “예(관리자 추가등록)”을 선택
- ⑤ 관리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
- ⑥ 관리자의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



⑦ “QR코드 스캔”버튼 선택 시, 사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라. 직원 등록

- 각 시설의 대표자 등록(앱설치, 본인인증 및 회원등록 완료)이 완료되었을 경우, 직원(또는 출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을 추가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 출입구가 여러 개일 경우, 해당 출입구마다 단말기 설치(거치) 및 방문자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함

① 메인페이지(로그인 후 첫 번째 화면)에서 직원등록 선택

② 직원등록 페이지가 열리며, 상단 오른쪽의 “더하기(+)” 아이콘 선택

③ 직원의 설명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직원 스스로 입력하게 하기보다는 대표자가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 추천)

* 추가 단말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소 별칭(00입구)으로 사용 가능

④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절차 완료

마.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지만 사업장 장소가 분리된 경우(출입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 등)에는, 각각 사업자(관리자)를 별도 등록하여 관리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번 가입 가능



사업자등록정보
[보유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세요.]
선택됨 : 00유통주점(5층)
사업자등록번호 : 4088880401
대표서명
사업장 전체면적
상점면적 : 50평
상점면적 : 50평
사업장 주소
00유통주점(5층)
사업자등록증 정보
(사업장 위치를 수신드릴 출입통로에 등록시오.)



사업자등록정보
[보유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세요.]
선택됨 : 00유통주점(6층)
사업자등록번호 : 4088880401
대표서명
사업장 전체면적
상점면적 : 50평
상점면적 : 50평
사업장 주소
00유통주점(6층)
사업자등록증 정보
(사업장 위치를 수신드릴 출입통로에 등록시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상세주소 다르게 하며
별도 가입

- ①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는 같게 입력
- ② 상세주소를 다르게 입력하여 새로 가입

바. 시설관리자용 앱을 활용한 입장 절차

- 스캔에 사용되는 휴대폰(혹은 태블릿)은 통화가 어려울 수 있고, 쉽게 방전될 수 있으므로,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에 전원을 상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휴대폰(혹은 태블릿)의 전면 카메라 혹은 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면카메라 사용시 QR 코드는 약 30cm의 간격을 두어 스캔하여야 원활한 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



- ① 로그인 완료 후 QR코드 스캔 버튼 선택
 - ② 가운데 투명한 부분 내 ③ 줄 부분에 입장객 QR 코드 스캔
- [스캔이 완료될 경우, 인증되었습니다. 음성메시지 송출]



주요 질의 응답(Q&A)

일반사항



전자출입명부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시설(업소) 등에서 수기(手記)로 작성되어오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 영문으로는 KI(Korea Internet) Pass, 키-패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이용자) 시설이용시 QR코드 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의 앱에 스캔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앱 운용회사 협력
-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암호화된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 이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주요 질의 응답(Q&A)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전자출입명부는 왜 필요한가요?

- A.**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애로를 겪었던 바 있었습니다.
 - *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제한명령'으로서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 (3.22)
 -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0% (2,032명)만 유선 통화 가능
 - 또한 기존 수기기재 방식의 명부는 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필기구 등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데 반해,
 -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 사용과 이중 보관체계(네이버 등 QR 발급회사는 내 개인정보만, 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 또한, 수기명부 작성 시 필기구 등에 의한 접촉감염의 방지효과도 있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시설 내에서의 확진자 노출에 대해, 신속한 검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은 소중한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추가 감염을 막고, 코로나19가 조기종식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역학조사에 활용되나요?



-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암호화된 일회용 이용자 QR 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QR 정보와 생성시간만을 저장 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는 시설명, 출입 시간과 암호화된 QR만 저장되게 됩니다.
-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전화번호 혹은 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시설명, 일시 등을 특정하여 2개 기관(QR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접촉자 정보를 요청하여 역학조사에 신속 활용하게 됩니다.
 - 역학조사관은 해당 시설의 위험도,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접촉 수준에 따라 자가격리, 코로나19 검사, 문자 발송 및 검사실시 등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질의 응답(Q&A)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시설 출입시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QR 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동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음
-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5.8. 시행한 집합제한령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명부작성 제도가 도입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없나요?



- 전자출입명부는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암호화된 일회용 이용자 QR 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QR 정보와 생성시간만을 저장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출입명부에는 시설명, 시간과 암호화된 QR만 저장됩니다.
- 전자출입명부와 관련된 이들 정보는 2개 기관에 분산되고 암호화되어 저장됨으로써, 해당 기관의 정보만으로는 이용자의 동선 파악 등이 불가능합니다.
- 확진자 발생 시에만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만이 이들 두 개 기관에서 분산보관된 암호화된 정보를 뮤울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가 끝나고 계속 사용해야 하나요?



-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 및 ‘경계’시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 감염병위기단계는 총 4개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계’는 지역사회에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 이상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관리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질의 응답(Q&A)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 부모님의 동의(문자인증 등)하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국민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 위해 QR 코드를 발급받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 사용은 본인 동의만으로 QR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 스마트폰이 없으면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에 비치된 별도 수기명부에 기재(신분증 제시 필요)하는 절차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시설 출입에 크게 제한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 국내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등 QR 발급을 위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도 별도 수기명부에 기재(신분증 제시 필요)하는 방식으로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앱은 어디서 다운받아야 하나요?



- 시설관리자 등 전자출입명부를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KI-Pass QR 발급에는 불필요)
-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안드로이드 4.1 이상 기기 필요)는 Google Play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 iPhone, iPad 등 iOS 사용자(iOS 11 이상 기기 필요)는 Apple App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전자출입명부 관련 자세한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네이버, Youtube 검색창에서 ‘전자출입명부’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외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 “전자출입명부” 검색



주요 질의 응답(Q&A)

이용자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시설 이용시 QR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합니다.
 -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상용 앱 운용회사 협력



QR코드 발급은 네이버에서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네이버 외에도, PASS 및 카카오톡 앱에서 가능합니다.
 - ‘20.6.10. 본 사업 실시일 기준으로는 네이버만 가능했으나, 6.24. 이후로 PASS(통신사 본인 확인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 7.1. 이후로 카카오톡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본인이 QR 코드 발급이 어려운 상황(예, 고령, 장애 등)에서, 타인이 QR코드 발급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이용자 본인의 사정(예, 고령 등 전자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 있을 경우, 타인(예, 가족, 시설관리자 등)이 QR 코드 발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단,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한 해, 이용자 본인이 동반한 상태에서 네이버 가입, 본인인증 등을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장애가 있으신 이용자가 시설 출입 시 QR 등록 및 스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주 후 정보가 자동 폐기되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의 암호화된 QR 및 출입기록 등은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의 두 배 기간인 4주(28일) 동안 저장·관리됩니다.
- 4주만 서버에 저장 및 자동 폐기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며, 각 기관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해당 정보의 자동폐기가 정확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요 질의 응답(Q&A)



개인정보가 암호화·분리 관리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안전한가요?



- 개인의 시설 출입 등 동선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기 위해 QR 코드로 암호화, 특정 기관 내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임의로 풀어 확인하지 못하도록 분산보관하는 시스템 운영정책에 기반하여 설계 관리되고 있습니다.

* QR코드는 음영으로 구분된 박스 형태의 2차원 코드로서, 사람이 직접 해당 QR 코드를 인식,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QR 코드 리더 등을 통해 시스템이 인식하는 경우에도 난수로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해킹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질문) QR 발급회사는 QR 코드를 풀 수 있지 않나요?
 - 네. QR 발급회사는 암호화에 사용된 ke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QR을 풀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에서는 QR 발급만을 할 뿐, 전자출입명부의 특정 시설 출입사항과 연계하지 못하여 개인의 동선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전자출입명부를 저장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 정보와 시설, 출입시간 만을 이중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있어, 역시 개인의 동선정보 확인은 불가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받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매우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장시, QR코드가 두 번 이상 스캔되어도 괜찮은가요?



- 네. 두 번 이상 스캔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 동일시설에서 두 번 이상 스캔된 경우에도 접촉자 파악 등을 위한 자료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추가질문) 시설에서 나갈때에도 QR 코드를 스캔해야 하나요?
 - 입장시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퇴장시에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장시에도 스캔하시는 것이 방역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스캔을 권고합니다.



QR코드를 한 번 발급받아도, 다른 시설 방문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다른 시설 방문 시, 동일한 절차로 QR 코드를 발급받아 스캔하시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에 활용되는 QR 코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한 일회용 QR 코드로 발급됩니다. 15초가 지나는 경우 간단히 재발급 버튼만 누르면 새로운 QR 코드가 생성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질문) QR 코드 최초 발행을 위해서 본인인증을 했었는데, 두 번째 QR 코드 발행시에도 또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나요?
 - 아니요. 최초 QR 코드를 발급하기 위해 본인인증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이후 QR 코드 발급 시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동의절차만을 통해 QR 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요 질의 응답(Q&A)

시설관리자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시설관리자의 휴대폰(스마트폰) 혹은 별도의 공기계(WiFi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 및 등록(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여야 합니다.
- 설치가 완료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열고, 로그인 한 후, QR 스캔 버튼을 눌러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는 절차로 사용합니다.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확인 불가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은 무엇인가요?



- 집합체한명령(중수본·지자체)이 내려진 시설 및 고위험 시설(12개 업종)*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설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20.6.28.일 기준, 향후 행정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10~12점에 해당하는 시설



의무시설인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서면 명부 작성도 가능한가요?



-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통신곤란시설이나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인 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적용예외 될 수 있습니다.
 - 서면 명부는 이용자 중 휴대폰이 없거나 거부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병행하여 비치·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시설인데 전자출입명부 설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운영 계도기간 이후,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요 질의 응답(Q&A)



전자출입명부 임의시설인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의시설 또는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의 등록은 상호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설 사용지 주소) 및 방역관리자의 입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자는 출입자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누구도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 다만, 시설관리자는 시간대 별로 출입자 통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역학조사관만이 역학조사의 목적에 한하여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와 서면명부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서면명부를 보완해서 사용가능합니다.

– 외국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의 시설 방문 확인 시 별도의 서면명부에 개인정보의 기재 방식(신분증 확인 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자출입명부 사용거부자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서면명부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 응답(Q&A)



직원등록 메뉴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 출입구에 별도의 공기계(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거치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권고됩니다.
-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또는 방역관리자)가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을 다른 개인적 용도(통화, 게임 등)로 이용시, 시설내 직원에게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하여 출입관리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중인 경우, 어떻게 시설관리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내 접촉자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하는 지점은 별도의 방역관리자를 지정, 별도의 계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었을 경우, 기 등록한 대표자(혹은 방역관리자)에게 신규 등록된 사항을 문자로 송부, 신규 등록된 지점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계없는 시설의 등록 시 문자에 송부된 기술팀에게 통보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입장과 퇴장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 명확한 체류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장과 퇴장으로 나눠 스캔하는 방안도 시스템 설계 시 고려되었으나,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입장, 퇴장을 나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권고) 입장시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퇴장시에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장시에도 스캔하시는 것이 방역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스캔을 권고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스캔 시간 등을 분석하여 체류시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 (추가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체류시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확보하는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등과 함께 분석하여 특정 장소의 체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 체류시간을 확인한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를 추정하기 위한 시간을 정하여 검사요청 문자 등 방역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 중,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 해당 시설의 방문이 확인된 확진자가 확인되는 경우, 방역당국의 시설 소독명령 등으로 해당 공간이 일시 폐쇄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열린 해당 시설은 확진자에 의한 추가 전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주요 질의 응답(Q&A)

할 수 있습니다.

Q 시설 내 직원도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 시설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직원 포함)은 전자출입명부에 QR 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 시설이용자, 직원 모두 해당 공간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확진자의 방문이 확인된 시설 내 모든 사람은 접촉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시설에 어떻게 입장하나요?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은 시설 방문시 별도의 서면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 하는 방식(신분증 확인 포함)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위한 태블릿, 데이터 비용 지원은 안되나요?



-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집합제한명령 등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 혹은 임의 설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의 설치·운영은 시설내 방역조치(손소독제 비치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앱 사용이 가능한 운영환경은 무엇인가요?



- 최근 3~4년 내 구입한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은 전자출입명부의 앱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안드로이드 4.1 이상 혹은 iOS 11 이상을 지원해야 함

- 또한, 오토포커스(Auto-focus)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의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QR코드 인식률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와이파이(Wi-Fi)가 꼭 연결되어야 하나요?



- 꼭 와이파이(Wi-Fi)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LTE 등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앱은 QR코드 인식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서버와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설내 설치된 WiFi와 연결을 권고합니다.
 - QR 코드 인식용 휴대폰 또는 태블릿 PC(전자출입명부 앱이 설치된 단말기) 자체에서 LTE 혹은 5G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Hot-spot 기능 활용 가능) 시설 외부에서 입장관리를 수행하는 관계로 WiFi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시설 내 별도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울 경우 방역관리자 혹은 직원 휴대폰의 hot-spot 기능을 동작하여 QR 코드 인식용 단말기에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스피드게이트 등 다른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자출입명부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 스피드게이트의 운영 서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가 28일 이상 저장되고, 방역당국에 즉각 제출할 수 있을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의 경우 즉각적인 접촉자 파악이



주요 질의 응답(Q&A)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가급적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을 권고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앱 사용시 QR코드 인식율이 떨어져, 이용자 입장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개선책이 있나요?



- 가급적 후면 카메라의 이용을 권고합니다.

- 대부분의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에 내장된 auto-focus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 인식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uto-focus로 조정되는 시간을 줄이면(고정된 거치대와 특정 거리(20~30cm)로 떨어진 곳에 휴대폰 받침대를 놓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 인식율이 높아집니다.



이벤트 업체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특정 행사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업체의 경우 해당 이벤트 별 별도 계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용자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준비된 서면 명부에 기입하는 방식(신분증 제시 포함)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단지(리플릿)

The diagram illustrates the use of QR codes for payment across different service providers. It features five main sections: KT (with icons for SKT and LG), SKT, LG, NAVER, and Kakao. Each section includes a QR code and a small illustration of a person using a smartphone to scan it. The overall theme is the convenience of QR-based payment methods.

카드 뉴스

1.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 사용
QR 코드

* 운영기관마다 출입 청탁 및 출입 관리 시스템은
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2. <이용자 QR 인식절차>

이용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여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출입 가능합니다.

● 이용자
● 시설관리자
● 개인정보 확인

QR코드 판독 기록
개인정보간 정보제공

정보제공
QR 코드

정보제공
QR 코드 인식

방역당국 요청 시
정보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가능

국민 여러분께
제공되는 출입이 편리해집니다.

3. <이용자>

- ① 네이버 또는 키모그린 후 QR코드 할급을 하세요.
- ②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QR코드 활용
키모그린 이용
정보제공 허락

QR코드 활용
QR코드 이용
정보제공 허락

※ QR코드 활용을 통해 QR코드 활용 가능합니다.

4. <시설 관리자>

- ① 전자출입명부app 설치, 등록하세요.
- ②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출입명부app
설치 및 등록

전자출입명부app
설치 및 등록

QR코드
Scanning

전자출입명부app
설치 및 등록

※ QR코드 활용, 개인 정보제공은 대상입니다.

포스터



홍보자료(전단지,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주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접속 > ‘홍보자료 & FAQ’ 선택 > ‘홍보자료’ 선택 > ‘전자출입명부’ 검색

안내 동영상 주소

- 7분 39초(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 침해? 직접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btrO5hbvy4>

- 1분49초(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렇게 활용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aiTvBpDgnm0>

- 35초(QR코드 전자출입명부, 직접 적는 것보다 더!안전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H_S18y8Ekhg